

□ 주요 변경 사항 (예정)

구분	변경 전(최초)	변경 후(1차 개정)	변경사항
신주의 배당기산일	제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배당기산일을 주금납입일의 익일로 한다.	제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u>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u> <u>배당기산일을 주금납입일의 익일로 한다.</u> (수정)
주주총회 결의방법	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u>법령 또는</u>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삭제)
주주총회 결의사항 (보통결의)	제28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초과의 수로써 결의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두 기의 사업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경우, 각 단위 별로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나중에 도래한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동일한 사업계획을 다시 결의하지 않음. 3.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하여 총자산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처분 등 부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단, 총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 계약 제외)	제28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초과의 수로써 결의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및 사업계획 기간의 연장. 두 기의 사업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경우, 각 단위 별로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나중에 도래한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동일한 사업계획을 다시 결의하지 않음. (추가) 3.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하여 총자산의 30% <u>이상에 해당하는</u> <u>초과하는</u>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처분 등 부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단, 총자산의 30% <u>이상에 해당하는</u> <u>부동산 또는 증권을 처분하는</u> 계약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에서 이미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	제28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u>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초과의</u> 수로써 결의한다. (수정)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및 사업계획 기간의 연장. 두 기의 사업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경우, 각 단위 별로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나중에 도래한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동일한 사업계획을 다시 결의하지 않음. (추가) 3.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하여 총자산의 30% <u>이상에 해당하는</u> <u>초과하는</u>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처분 등 부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단, 총자산의 30% <u>이상에 해당하는</u> <u>부동산 또는 증권을 처분하는</u> 계약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에서 이미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

	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u>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계약 제외) (수정)</u>
주주총회 결의사항 (특별결의)	<p>제28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p> <p>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p> <p>5. 자산관리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p> <p>6. 자산관리회사 변경 및 교체</p> <p>7. 정관의 변경</p> <p>8.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의 합병</p> <p>9. 회사의 해산</p> <p>10. 제4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 발행</p> <p>11. 부투법 및 상법 기타 법령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p>	<p>제28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p> <p>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 3 초과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초과의 수로써 결의한다.</p> <p>5. 자산관리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변경(자산관리회사의 변경 제외)</p> <p>6. 정관의 변경</p> <p>7.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의 합병</p> <p>8. 회사의 해산</p> <p>9. 제4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 발행</p> <p>10. 개발기간의 연장 및 연장기간 보수 지급(자산관리회사 보수 및 PM사 보수 포함)</p> <p>11. 총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p> <p>12. PF시점의 총 사업비(사업원가)의 80%를 초과하는 차입</p> <p>13. 부투법 및 상법 기타 법령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p>	<p>제28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p> <p>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4분의 3 초과의 수로써 결의한다. (수정)</p> <p>5. 자산관리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자산관리회사의 변경 제외) (수정)</p> <p>6. 자산관리회사 변경 및 교체 (삭제)</p> <p>7. 정관의 변경</p> <p>8.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의 합병</p> <p>9. 회사의 해산</p> <p>10. 개발기간의 연장 및 연장기간 보수 지급(자산관리회사 보수 및 PM사 보수 포함) (추가)</p> <p>11. 총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추가)</p> <p>12. PF시점의 총 사업비(사업원가)의 80%를 초과하는 차입 (추가)</p> <p>13. 부투법 및 상법 기타 법령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p>
주주총회 결의사항 (전원동의)	(신설)	<p>제28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p> <p>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 전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p> <p>1. PM사와의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의 해지 및 PM사의 변경</p> <p>2. 자산관리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의 해지 및</p>	<p>제28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p> <p>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 전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추가)</p> <p>1. PM사와의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의 해지 및 PM사의 변경 (추가)</p> <p>2. 자산관리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의 해지 및</p>

		자산관리회사의 변경	자산관리회사의 변경 (추가)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	<p>제30조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p> <p>③ 회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이사 2명을 선임하기로 하며, 감독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감독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제30조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p> <p>③ 회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하기로 하며, 감독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감독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제30조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p> <p>③ 회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이사 2명 <u>이상</u>을 선임하기로 하며, 감독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감독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수정)</p>
이사회 결의사항	<p>제36조 (이사회의 결의사항)</p> <p>이사회는 법률이나 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음사항을 결의한다.</p> <p>5. 자산의 투자·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항</p> <p>6.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p> <p>7. 제11조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p> <p>8.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 또는 신주 배정시에 단주가 발생할 경우 그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p> <p>9.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식 양도 승인에 관한 사항</p> <p>10.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p> <p>11. 제42조 제2항 제2호, 제3호 및 동조 제5항 제6호에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p>	<p>제36조 (이사회의 결의사항)</p> <p>이사회는 법률이나 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음사항을 결의한다.</p> <p>5. PM사와의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p> <p>6. 자산의 투자·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항(PM사 보수 지급 포함)</p> <p>7.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p> <p>8. 제11조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p> <p>9.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 또는 신주 배정시에 단주가 발생할 경우 그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p> <p>10.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식 양도 승인에 관한 사항</p> <p>11.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p> <p>12. 부동산 또는 부동산관련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p> <p>13. 제42조 제2항 제2호, 제3호 및 동조 제5항 제6호에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p>	<p>제36조 (이사회의 결의사항)</p> <p>이사회는 법률이나 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음사항을 결의한다.</p> <p>5. PM사와의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추가)</p> <p>56. 자산의 투자·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항(PM사 보수 지급 포함) (추가)</p> <p>67.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p> <p>78. 제11조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p> <p>89.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 또는 신주 배정시에 단주가 발생할 경우 그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p> <p>910.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식 양도 승인에 관한 사항</p> <p>1011.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p> <p>12. 부동산 또는 부동산관련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추가)</p> <p>1113. 제42조 제2항 제2호, 제3호 및 동조 제5항 제6호에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p>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 보수	<p>제38조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보수)</p> <p>② 감독이사의 보수는 월 일백만원(₩1,000,000) 이하로 한다.</p>	<p>제38조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보수)</p> <p>② 감독이사의 보수는 월 오십만원(₩500,000) 이하로 한다.</p>	<p>제38조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보수)</p> <p>② 감독이사의 보수는 월 <u>일백만원(₩1,000,000)</u> <u>오십만원(₩500,000)</u> 이하로 한다. (수정)</p>
사업연도	<p>제46조 (사업연도)</p> <p>회사의 사업연도는 6개월 단위로 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및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회사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사업연도를 정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의 증자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로 하고, 회사가 해산되는 연도의 경우는 그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그 해산일까지로 한다.</p>	<p>제46조 (사업연도)</p> <p>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하되, 회사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사업연도를 정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의 증자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로 하고, 회사가 해산되는 연도의 경우는 그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그 해산일까지로 한다.</p>	<p>제46조 (사업연도)</p> <p>회사의 사업연도는 <u>6개월 단위로 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및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u>, 회사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사업연도를 정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의 증자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로 하고, 회사가 해산되는 연도의 경우는 그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그 해산일까지로 한다. (수정)</p>

* 기재되지 않은 조문 및 각 호는 현행과 동일함